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9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 박희승 · 민병덕 · 김정호

윤준병 · 김준혁 · 서영교

정준호 • 박상혁 • 백혜련

안호영 · 김영호 · 강유정

전진숙 · 김한규 · 정진욱

소병훈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을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공공기관 중 임직원의 음 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은 공공의 영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방지·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및 제80조의2).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6제5항 중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0년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5년
- 3. 그 밖의 사유: 3년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 킹범죄
-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 등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및 징계부과금 사유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제63조의6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5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3년</u>	<u>다</u>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u>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u>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u><신 설></u>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사유: 10년</u>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u>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u>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
	<u>상 성범죄</u>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신 설>

<신 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 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 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 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u>1.</u> 감사원
- 2.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 | 기관
- 3. 행정안전부장관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5년

3. 그 밖의 사유: 3년

등 개시・종료 통보) 감사원, 검찰 · 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 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 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건-----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 위와 관련된 사건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스토킹범죄
-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u>는 사항</u>